

# 『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  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김경훈 의원입니다.

먼저 『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조례안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이 본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은 바,

법령 부적합성의 소지가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본 조례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  
인용조문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 
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 
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 
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